

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2. 개정이유

-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공회의소 사업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(안 제8조제2항)
- 나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적용(안 전반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13일까지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팩스 등
- 다. 기재내용 : 성명 · 주소 · 생년월일 · 연락처 · 의견
- 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)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, 파주시청 기업지원과(우 10930)
 - 전화 : 031)940-4531 / Fax 031)940-4539 / 이메일 hoho1210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